

## I

### 중앙법령 개선분야

1. 국도변에 협동화단지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2. 기부 채납한 도로 점·사용 신청 시 점·사용료가 감면됩니다. 5
3. 국가·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도 푸드 트럭 영업이 가능해 졌습니다. 6
4. 일반음식점에도 당구·다트 등 게임시설이 허용됩니다. 7
5. 정보열람 근거마련으로 직권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8
6.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폐지하였습니다. 9
7.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10
8.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1
9. 농업진흥지역에서 동식물검역 및 방역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12
10.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53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13
11. 어촌·어항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14
12.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 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15
13.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지문인식도 가능해 졌습니다. 16
14. 유치원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17

## II

### 자치법규 개선분야

1.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20
2.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1
3. 건설 분야 가설건축물 신고를 공장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22
4. 개인택시, 화물용달 운송사업자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 하였습니다. 23
5. 농기계 임대 대수 및 임대 시간을 개선하였습니다. 24
6. 거제시 문화예술창작촌 입주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25

### Ⅲ

#### 유사행정규제 개선분야

- 
- |                                     |    |
|-------------------------------------|----|
| 1. 자의적 운영소지가 있는 대부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28 |
| 2. 대부료 강제 납부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29 |
| 3. 공사에 유리한 계약해석을 개선하였습니다.           | 30 |
| 4. 사용료 반환 관련 불공정한 계약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31 |
| 5.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부담전가를 개선하였습니다.   | 32 |
| 6. 사용허가 취소 관련 불공정한 계약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33 |
| 7.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하였습니다.      | 34 |
| 8. 계약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하던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35 |
| 9. 보험료 및 공제금 관련 불합리한 부담전가를 개선하였습니다. | 36 |
| 10. 공과금 관련 불합리한 부담전가를 개선하였습니다.      | 37 |
- 

### Ⅳ

#### 조례 지침 개정을 통한 기업투자 기반 조성 분야

- |                                       |    |
|---------------------------------------|----|
| 1.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기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40 |
| 2.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한시적 장기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 41 |

# I 중앙법령 개선분야



# 01

## 국도변에 협동화단지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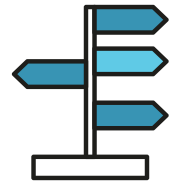
### 개선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일반·도시 첨단산업단지는 국도변에 사설안내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협동화단지는 국도변에 사설안내 간판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 개선 후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3(사설안내 표지의 설치 대상 표6-1)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협동화 단지를 추가하여 국도변에서도 협동화 단지를 알리는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3 (사설안내 표지의 설치대상 표6-1)

## 02

기부채납한 도로 점·사용 신청 시  
점·사용료가 감면됩니다.

## 개선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기부채납한 부지에 대해 점사용 신청을 할 경우에도 별도의 점·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 개선 후

도로확장 등에 따라 사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점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점·사용료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8호

## 03

# 국가·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도 푸드 트럭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 개선 전

정부에서는 푸드 트럭을 규제개혁의 척도로 삼고 있으며, 영업가능 장소를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 재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제14호 별표15의 2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축제나 각종 행사에서도 푸드 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제14호 별표15의2 9호

## 04

일반음식점에도 당구·다트 등  
게임시설이 허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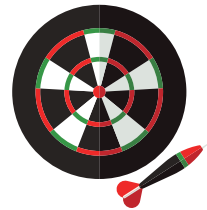
## 개선 전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외국인 유흥주점 또는 일반 음식점에서 다트나 당구장 등의 게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게임시설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에서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라고 개정하여 게임 시설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14

# 05

## 정보열람 근거마련으로 직권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 개선 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권말소를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9항에 허가권자가 직권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9항



## 06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폐지하였습니다.



## 개선 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다른 영유아에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정기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연계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 확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별도의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8 - 가 - 1) 예방접종내역 확인 가능

# 07

##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선 전

해양동물쇼를 하지 않는 수족관도 관광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시설기준에 명시된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을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4호 가목 전문휴양업 (2) 개별기준 중 (바)수족관 등록기준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투자를 개선하였습니다.

폐지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4호 가목 전문휴양업 (2) 개별기준 중 (바)수족관 등록기준 4) 개선

## 08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개선 전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의 등록과 변경등록은 규정하고 있으나, 폐업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 개선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를 신설하여,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의 폐업신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09

# 농업진흥지역에서 동식물검역 및 방역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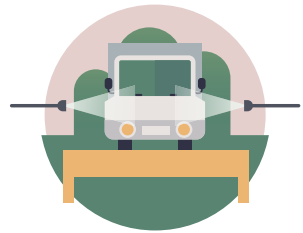
### 개선 전

농업진흥지역에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제한(동식물 방역 및 검역소)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던 동식물 검역 및 방역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7호

## 10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53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개선 전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특히 태풍에는 농작물이 매우 취약한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일부 품목으로 한정(43개)되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2017년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 개정으로 53개 품목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확대됩니다.

※ 사과, 배, 포도, 감, 복숭아, 벼, 콩, 옥수수, 차, 인삼 등



### 관련법령

• 「2017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 (개정)

# 11

## 어촌·어항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개선 전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승인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 양도, 합병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개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파산으로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승계자가 최초 허가 받은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개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파산으로 인해 경매로 취득한 권리 의무 승계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얻거나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허가 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초 허가받은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어촌·어항법」 제55조(권리·의무의 이전)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28조(권리 의무의 승계 신고)

## 12

##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 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개선 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출하는 서류 중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와 함께 지적도 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후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에 따른 공유지 무상양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지적도 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에 해당되어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어촌·어항법」 제12조(국유지 공유지의 영여 등) 제2항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신청서 등) 제4항

# 13

##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지문인식도 가능해졌습니다.



### 개선 전

주민민원 발급기에서는 본인지문 인식으로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나, 창구에서는 신분증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 개선 후

이제는 민원창구에서도 '신분증 또는 지문인식'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6항



## 14

유치원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 개선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자로 지정되어 별도의 처리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1일 급식인원 200명 미만의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의무 등이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호

Blue x  
City GEOJE



II  
자치법규  
개선분야



# 01

##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선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도로 정하면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개선 후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시장이 문화재의 보존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호

## 02

##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개선 전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거리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는 일률적으로 100m로 정하고 있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주택이나 공장의 구분 없이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을 직선 거리 100m이내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300m 이내로 완화하여 공장용지 확보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함과 아울러 근로자들의 도로변 불법주차 근절로 주민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16조(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범위 및 설치기준)

# 03

## 건설 분야 가설건축물 신고를 공장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개선 전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8호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 5항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공사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공장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거제시 건축 조례」 제12조(가설건축물) 제2항제6호

## 04

## 개인택시, 화물용달 운송사업자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전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등의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등의 운송사업자가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4조(차고지 설치 면제자의 의무) 삭제

# 05

## 농기계 임대 대수 및 임대 시간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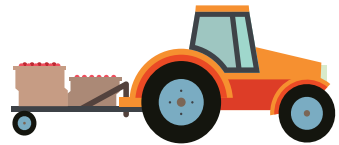
한 농가가 한 대의 농기계만 임대할 수 있었고, 또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 (09:00~ 18:00)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필요·사정에 따라 농기계를 2대까지 임대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영농작업 시간대가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임대 대수 : 1농가 1대 → 2대
- 임대 시간 : 08:00 ~ 18:00(단, 3월~8월은 09:00~19:00)



### 관련법령

-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 제③④항



## 06

## 거제시 문화예술창작촌 입주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 개선 전

문화예술창작촌에 입주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문화예술창작촌 입주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완화하여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거제시 문화예술창작촌 운영 규정」 제11조(입주기간)

Blue x  
City   
GEOJE



# Ⅲ

## 유사행정규제 개선분야



# 01

## 자의적 운영소지가 있는 대부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전

공사가 재산을 대부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별히 공사에 유리하다고 사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자가 불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공사의 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개정하여 공사에게 유리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자산관리규정 제28조(대부조건)

## 02

## 대부료 강제 납부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전

공사와 대부자가 재산교환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교환 자금이 발생할 경우, 계약체결 즉시 대부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공사와 대부자가 재산교환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교환 자금이 발생할 경우, 자금의 규모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재산관리규정 제1호 서식(교환계약서 제5조)

## 03

# 공사에 유리한 계약해석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전

공사와 대부자가 상호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공사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공사와 대부자가 상호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공사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재산관리규정 별지1호 서식(교환계약서 제6조)

## 04

## 사용료 반환 관련 불공정한 계약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전

납부한 사용요금은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요금에 대하여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사용료를 반환하고, 피 허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금액의 10%를 추가 공제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재산관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허가조건 제5조)

# 05

##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부담전가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전

공사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피 허가자가 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공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부담을 부여하였습니다.

### 개선 후

법령에 근거 없이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불합리한 부담전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재산관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허가조건 제6조)



## 06

## 사용허가 취소 관련 불공정한 계약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전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공사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 규정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공사가 사용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라는 일방적인 계약규정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재산관리규정 별지 제3-2호(허가조건 제11조)

# 07

##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전

피 허가자가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불공정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피 허가자가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사용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재산관리규정 별지 제3-2호(허가조건 제15조)

## 08

## 계약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하던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전

공사와 대부자가 재산대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공사와 대부자가 재산대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재산관리규정 별지 제3-3호(대부계약서 제4조)

## 09

# 보험료 및 공제금 관련 불합리한 부담전가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전

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가 지정하는 화재보험 회사에 공사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정하고,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을 체결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부담 전가 규정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나 공제금을,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공사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으로 불합리한 부담전가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자산관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재산대부계약서 제6조)

## 10

## 공과금 관련 불합리한 부담전가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 전

공사와 사용자가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부담 규정이 있었습니다.

### 개선 후

본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당초 규정을, 소유권 이전일 또는 사용개시일로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부담전가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재산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재산매매계약서 제14조)

Blue x  
City   
GEOJE



# IV

## 조례 지침 개정을 통한 기업투자 기반조성 분야



# 01

##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기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개선 전

- 거제시는 조선 산업과 해양플랜트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도시이고, 조선과 해양플랜트 산업은 각 선박 및 공정별로 3,000 ~ 10,00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며, 작업 가능 구역(도크와 안벽)으로 이동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함.
- 이러한 작업환경으로 도크나 안벽마다 사무실, 식당, 창고 임시사무실 등의 지원 시설이 필요하나 고정식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부지 활용도가 떨어짐은 물론 그런 여유공간도 부족하므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이동하면서 사용하고자 함.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르면 컨테이너와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 창고,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거제시 건축 조례」에서는 건설공사용 가설건축물로만 제한하고 있음.



### 개선 후

- 「거제시 건축 조례」 제12조(가설건축물) 제②항 제6호에 공장에 부수되는 임시 식당,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등의 건축물을 신설하여 공장에서도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 선박 건조가 종료 된 도크나 안벽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신규 선박을 건조하는 도크나 안벽으로 이동하여 설치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고정식 건축물 건축을 지양함과 아울러 유휴 부지를 적기에 활용 할 수 있고, 또한 식당을 옮겨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산성 향상 등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약 4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 관련법령

- 「거제시 건축 조례」 제12조(가설건축물) 제②항 제6호



## 02

##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한시적 장기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 개선 전

- 2011년 OO중공업은 네덜란드 Shell사로부터 약 3조원에 이르는 해양플랜트 고부가가치의 FLNG선을 수주하였음.
- 공정 중 초저온 보냉 작업(약 600배로 압축한 LNG를 영하 163도 아래로 유지 시켜야 하는 고난도 작업)을 위하여 58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340 여명에 불과하여 해외로부터 280여명의 고기능 외국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나, 고기능 인력이 장기간(1년 정도) 체류 할 수 있는 비자가 없어 단기비자(90일 체류)를 활용하여 국내로 들어와 90일 작업 후 출국 → 입국을 4회 정도 반복하여야 하는 실정이었음.



### 개선 후

-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 규제개선 과제로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비자(1년) 신설을 건의 하였으나, 3년 장기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체류용 비자를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한시적으로 C-4(90일 체류) 비자를 E-7(체류)비자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개정하여 시달.
- 6. 22일 이전에 C-4비자로 입국한 고기능 외국인력은 E-7으로 변경하였으며, 6. 22일 이후에 입국하는 자는 한시적(2017. 2. 28.까지) E-7비자로 입국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
- 이 조치로 인하여 OO조선이 부담하여야 하는 450~600억원의 손실 예방과 신뢰성 및 추가물량 확보 효과가 있었음.



### 관련법령

- 법무부 체류관리과 - 3464(2016. 6. 22.)호

# 2016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미래성장 거제’ 그 출발은 규제개혁으로부터

---

2017년 6월 발행

2017년 6월 인쇄

발행처: 거제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TEL. (055) 639-3292, 3293

인쇄처: 엔에스디자인

---